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57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 : 김 건 • 이성권 • 박상웅

김용태 · 인요한 · 박정훈

이헌승 • 한지아 • 신동욱

서일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재생에너지로 산업의 모든 필요 전력을 충당하자는 'RE100'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는 'CFE'가 논의되고 있음.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은 자원 등 한계가 있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지난 10월 청정에너지장 관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이 공식 출범하면서 무탄소에너지 활용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임.

이에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의규정과 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 신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무탄소에너지"란 생산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
 -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의2에 따른 청정수소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의2 다음의 "제6장 벌칙"을 "제7장 벌칙"으로 한다.

제23조의5 다음의 "제5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한다.

제23조의5 다음에 제5장(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 등

- 제23조의6(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 ① 무탄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무탄소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제23조의7제 1항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무탄소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1. 무탄소에너지 공급자
 - 2. 무탄소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 3. 유효기간
 -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 제23조의7(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 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무탄소에너지 관련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와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8(공급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 3.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2	n -1 .1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4. "무탄소에너지"란 생산 과</u>
	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2조제5호의 온실가스
	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에너지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u>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u>
	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
	<u>생에너지</u>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원자력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_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청
	<u>정수소</u>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u>하는 것</u>

<u><신 설></u> <신 설> 제5장 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 등 제23조의6(무탄소에너지 공급인 증) ① 무탄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무탄소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 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 다.
-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무탄소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1. 무탄소에너지 공급자
- 2. 무탄소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신 설>

<신 설>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 기하여야 한다.

제23조의7(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 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기술・시 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무탄소 에너지 관련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 청하여야 한다.
-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지정절차와 업무범위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제23조의8(공급인증기관 지정취 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

<u>제5장</u> 보칙

제28조의2(청문) 산업통상자원부 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 3.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

<u>제6장</u> 보칙

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8조	의2(청문) -	
	r /=1 =11 =1	-1 Ó \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u>제6장</u> 벌칙	<u>제7장</u> 벌칙